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01.15.]

1. 건설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99-2, [주택관리번호 2025000661]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중전 선정 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15.(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단, 금융자산 및 부채의 판단기준일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즉,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는 해당 산정시점에 조회된것으로 적용합니다.)
-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1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 1986.1.16. ~ 2007.1.1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 1961.1.15.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별	공급 계층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280)	세대 당 계약면적(m ²)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21A	대학생	96	9	40	21.23	12.9856	2.753	16.1011	53.0697	1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26.03
	청년(소득無)											
	청년(소득有)											
31A	청년(소득無)	30	28	15	31.93	19.5304	4.1405	24.2162	79.8171	10		
	청년(소득有)											
	주거급여수급자	24	23	15					20			
31B	고령자 (주거약자용)	38	33	20	31.93	19.5304	4.1405	24.2162	79.8171	20		
44A	청년(소득無)	108	61	20	44.71	27.3474	5.7978	33.9087	111.7639	10		
	청년(소득有)											
	신혼부부·한부모가족	82	-	40					10~14			
44B	청년(소득無)	46	-	70	44.71	27.3474	5.7978	33.9087	111.7639	10		
	청년(소득有)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14				
44C	청년(소득無)	46	-	60	44.65	27.3107	5.79	33.8632	111.6139	10		
	청년(소득有)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14				

- 금회 모집은 최초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로 인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기계약 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당첨자발표 시점의 미계약분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4B형, 44C형은 대기중인 예비자가 없어, 당첨자 발표후 입주 가능한 공가호수에 따라 계약이 진행됩니다.
-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입주 후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할 예정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세대구성원)가 있는자(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공급형별)의 30 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합니다. (주거약자용 제외)

- 21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계층」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합니다.
- 44B형, 44C형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모집 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31B형)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21A형은 가스쿠팡(2구형), 책상, 반침장, 소형냉장고가 설치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계층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21A	대학생	31,620	1,581	30,039	139,650	(+) 13,000	44,620	74,650
	(-) 26,000					5,620	215,480	
	청년(소득無)	31,620	1,581	30,039	139,650	(+) 13,000	44,620	74,650
	(-) 26,000					5,620	215,480	
	청년(소득有)	33,480	1,674	31,806	147,870	(+) 15,000	48,480	72,870
	(-) 27,000					6,480	226,620	
31A	청년(소득無)	47,600	2,380	45,220	210,230	(+) 25,000	72,600	85,230
	(-) 39,000					8,600	323,980	
	청년(소득有)	50,400	2,520	47,880	222,600	(+) 26,000	76,400	92,600
	(-) 42,000					8,400	345,100	
	주거급여수급자	42,000	2,100	39,900	185,500	(+) 22,000	64,000	75,500
	(-) 35,000					7,000	287,580	
31B	고령자 (주거약자용)	53,200	2,660	50,540	234,960	(+) 28,000	81,200	94,960
	(-) 44,000					9,200	363,290	
44A	청년(소득無)	67,320	3,366	63,954	297,330	(+) 35,000	102,320	122,330
	(-) 56,000					11,320	460,660	
	청년(소득有)	71,280	3,564	67,716	314,820	(+) 37,000	108,280	129,820
	(-) 59,000					12,280	486,90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9,200	3,960	75,240	349,800	(+) 41,000	120,200	144,800
	(-) 66,000					13,200	542,300	
44B	청년(소득無)	67,320	3,366	63,954	297,330	(+) 35,000	102,320	122,330
	(-) 56,000					11,320	460,660	
	청년(소득有)	71,280	3,564	67,716	314,820	(+) 37,000	108,280	129,820
	(-) 59,000					12,280	486,90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9,200	3,960	75,240	349,800	(+) 41,000	120,200	144,800
	(-) 66,000					13,200	542,300	
44C	청년(소득無)	66,980	3,349	63,631	295,820	(+) 35,000	101,980	120,820
	(-) 55,000					11,980	456,230	
	청년(소득有)	70,920	3,546	67,374	313,230	(+) 37,000	107,920	128,230
	(-) 59,000					11,920	485,31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8,800	3,940	74,860	348,030	(+) 41,000	119,800	143,030
	(-) 65,000					13,800	537,610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기본 임대조건이 갱신됨)**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의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가(내국인)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부적격)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자산기준 가산 내용**
 -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1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대학생은 ①-㉓와 ②~④를 충족하면 되고, 취업준비생은 ①-㉓와 ②~④를 충족하면 됨)

①-㉓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대학생																					
①-㉓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취업준비생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대학생 · 취업준비생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월평균소득금액</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인</td> <td>4,317,797원 이하</td> <td>120%</td> </tr> <tr> <td>2인</td> <td>6,024,703원 이하</td> <td>110%</td> </tr> <tr> <td>3인</td> <td>7,626,973원 이하</td> <td>100%</td> </tr> <tr> <td>4인</td> <td>8,578,088원 이하</td> <td>100%</td> </tr> <tr> <td>5인</td> <td>9,031,048원 이하</td> <td>100%</td> </tr> <tr> <td>6인</td> <td>9,733,086원 이하</td> <td>100%</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2인	6,024,703원 이하	110%	3인	7,626,973원 이하	100%	4인	8,578,088원 이하	100%	5인	9,031,048원 이하	100%	6인	9,733,086원 이하	100%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2인	6,024,703원 이하	110%																					
3인	7,626,973원 이하	100%																					
4인	8,578,088원 이하	100%																					
5인	9,031,048원 이하	100%																					
6인	9,733,086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산정 범위</p>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td> <td>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td> <td>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가산 적용 : 출생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생자녀 1인 10%p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대학생 계층	1인	0인	120%	104,000,000원	-
	2인	0인	110%	104,000,000원	-
		1인	120%	114,000,000원	-
	3인 이상	0인	100%	104,000,000원	-
		1인	110%	114,000,000원	-
		2인 이상	120%	125,000,000원	-

※ 출생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의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317,797원 이하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시흥시 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 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2세 미만 자녀 30% 우선선정 → 순위 → 추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1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㉒와 ②~⑤를 충족하면 됨)

①-㉓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 1986.1.16. ~ 2007.1.15.)	청년																											
①-㉒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사회초년생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청년, 사회초년생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주택공급신청자</th> <th>가구원수</th> <th>월평균소득금액</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td> <td>1인</td> <td>4,317,797원 이하</td> <td>120%</td> </tr> <tr> <td>2인</td> <td>6,024,703원 이하</td> <td>110%</td> </tr> <tr> <td>3인</td> <td>7,626,973원 이하</td> <td>100%</td> </tr> <tr> <td>4인</td> <td>8,578,088원 이하</td> <td>100%</td> </tr> <tr> <td>5인</td> <td>9,031,048원 이하</td> <td>100%</td> </tr> <tr> <td>6인</td> <td>9,733,086원 이하</td> <td>100%</td> </tr> <tr> <td>세대원(본인)</td> <td>1인</td> <td>4,317,797원 이하</td> <td>120%</td> </tr> </tbody> </table> <p>*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p>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2인	6,024,703원 이하	110%	3인	7,626,973원 이하	100%	4인	8,578,088원 이하	100%	5인	9,031,048원 이하	100%	6인	9,733,086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317,797원 이하	120%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2인		6,024,703원 이하	110%																									
	3인	7,626,973원 이하	100%																										
	4인	8,578,088원 이하	100%																										
	5인	9,031,048원 이하	100%																										
	6인	9,733,086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317,797원 이하	120%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63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가산 적용 : 출생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생자녀 1인 10%p 가산]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 · 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0인	120%	254,000,000원	45,630,000원
		0인	110%	254,000,000원	45,630,000원
	2인	1인	120%	279,000,000원	50,200,000원
		0인	100%	254,000,000원	45,630,000원
		1인	110%	279,000,000원	50,200,000원
		2인 이상	120%	305,000,000원	54,760,000원
세대원(본인)	1인	0인	120%	254,000,000원	45,630,000원
		0인	110%	254,000,000원	45,630,000원
	2인	1인	120%	279,000,000원	50,200,000원
		0인	100%	254,000,000원	45,630,000원
		1인	110%	279,000,000원	50,200,000원
		2인 이상	120%	305,000,000원	54,760,000원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의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317,797원 이하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시흥시 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2세 미만 자녀 30% 우선선정 → 순위 → 추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㉒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㉒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처리됨)

- ①-㉓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㉒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㉒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63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한부모가족	X	2인	0인	11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20%	371,000,000원	50,20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50,20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54,76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X	2인	0인	11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00%	337,000,000원	45,630,000원
		3인	0인	110%	371,000,000원	50,20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50,200,000원
		4인 이상	0인	10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50,200,000원
	○	2인	0인	120%	405,000,000원	54,760,000원
			1인	130%	405,000,000원	54,760,000원
		3인	0인	13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30%	371,000,000원	50,200,000원
		4인 이상	0인	12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30%	371,000,000원	50,200,000원
		2인 이상	140%	405,000,000원	54,76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7,120,104원 이하	7,667,8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9,915,065원 이하	10,677,762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11,151,514원 이하	12,009,323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11,740,362원 이하	12,643,467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12,653,012원 이하	13,626,320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시흥시 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2세 미만 자녀 30% 우선선정 → 순위 → 추첨

3-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2인	6,024,703원 이하	110%
3인	7,626,973원 이하	100%
4인	8,578,088원 이하	100%
5인	9,031,048원 이하	100%
6인	9,733,086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63만원 이하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고령자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생자녀 1인 10%p 가산]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고령자	1인	0인	120%	337,000,000원	45,630,000원
		2인	110%	337,000,000원	45,630,000원
	3인 이상	1인	120%	371,000,000원	50,200,000원
		0인	10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50,20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54,760,000원

-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임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317,797원 이하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2세 미만 자녀 30% 우선선정 →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2세 미만 자녀 30% 우선선정 →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청약신청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p>'26.1.27.(화) 10:00 ~ '26.1.29.(목) 17:00</p> <p>※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p> <p>※ 청약 신청내용 변경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 (청약 마감이후 변경불가)</p> <p>[현장접수] '26.1.28.(수) 10:00~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p>	<p>'26.2.5.(목) 15:00 이후</p> <p>(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p>	<p>'26.2.6.(금) ~ '26.2.12.(목)</p> <p>(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임대공급운영1팀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p> <p>※ 등기우편은 '26.2.12'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접수불가</p>	<p>'26.6.11.(목) 15:00 이후</p> <p>(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 또는 ARS(1661-7700)</p>	<p>예비자 순번에 따라 개별안내</p> <p>※ 당첨자 발표후 입주가 가능 공가에 대해 '26. 7월 초' 계약체결 예정 (변경될 수 있음)</p>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됩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 신청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하며, 청약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기간 내 해당서류(공고문 6. 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6. 2. 12.(목)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등기우편 발송시 주소 오기입 등으로 인한 미송달이나 서류 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우체국 소인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이상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종 예비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않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6.1.27.(화) 10:00 ~ 1.29.(목) 17:00]

■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인증서 로그인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6.1.27.(화) 10:00 ~ 1.29.(목)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 하셔서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입력해야 하며,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체결안내문, 잔금안내문, 입주 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이 해당 주소지로 발송되오니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로 우편물수령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SMS 수신동의 및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6.1.27.(화) 10:00 ~ 1.29.(목) 17:00]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Play스토어에서 앱 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민간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센터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



- 유의사항(인터넷PC 청약방법 유의사항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청약 건을 PC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PC에서 청약한 건을 모바일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6.1.27.(화) 10:00 ~ 1.29.(목)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 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당첨자 확인, 계약내역 조회, 보증금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청약접수 방법(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 PC·모바일 신청자는 해당사항 없음

기 간	1.28.(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약 도	
장 소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대 중 교통편	<p>(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도보 2분 거리) (버 스) 오리역 하차</p> <p>- 일반버스 : 60, 101, 116-3, 30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p>		
구 비 류	<p>□ 아래 서류와 [6.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미지참시 접수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p>(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p>		

5.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6.2.5.(목) 15: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우측상단 ≡(메뉴) 클릭 → 청약 탭 내 『청약결과 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6.2.6.(금) ~ 2.12.(목)** (26.2.12.(목)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6. 신청서류」 및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을 확인하여 제출

* 우편발송주소 : (우편번호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1.1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전원 필수 제출	<p>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등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p>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사항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지1-1 공사서식)
	<p>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대상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각 1통 (별지 1-2, 1-3 공사서식)
	<p>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p>자산 보유 사실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별지1-4 공사서식)	
해당 자 만 제 출	<p>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p>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소사실증명서) 등 추가제출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을 받으려는 경우(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 	1통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우리공사가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구비서류	발급처
대학생계층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별지2호)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청년계층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해당 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1)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제외가 필요한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2)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사람 중 기간 제외가 필요한 자 -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 해당 산업체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출력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해당 학교 병무청, 민원24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제출(공사양식)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가능) ※ 입주 시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추가 제출 (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별지3-1호) (별지3-2호) 행정복지센터
신혼 부부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제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6.06.11.(목) 15: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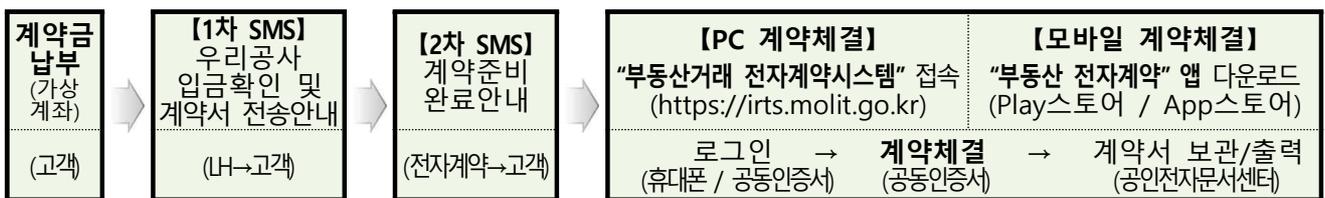
■ 계약안내 [예비자 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전자계약 [기간 : 별도통보]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화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트,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p>기타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p>부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 주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일반	토지,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 지방세정 자료

자산	건축물 및 주택	<p>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84 483 1439 672">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10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신청자격 중 아래 조건은 제외함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입주자 선정(당첨자 발표)일 전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후 부적격 해지(위약금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입주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 또한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6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 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및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 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파양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수속 시 혼인 관련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 각각 제출) 각 1부씩]를 제출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후 처리기간이 수일이상(1~2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입주 전 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혼인신고 신청 중인 접수증은 제출 불가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 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지구 및 단지 단지여건등

■ 지구내·외부 여건 (지구내 또는 지구인근)

- 당해 단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상 준주거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시설 등 입지 제한, 일조 등 환경규제 등이 일반주거지역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 당해 지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33호(2019.12.13)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26호(2022.11.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38호(2024.12.3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정왕)을 득하여 시행 중인 사업으로 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등 관련 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후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시흥시 소유 부지(무상제공)에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행복주택과 어울림센터(어울림플랫폼, 보건소, 근린생활시설)가 함께 건설되며, 어울림센터는 시흥시에서 소유하여 운영·관리하고,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유하고 운영·관리 합니다.
* 행복주택은 공동이행협약에 따라 임대개시일로부터 30년 운영후 시흥시로 무상이전 (종료기간 1년 전에 양기관이 사전 협의하여 운영기간 연장 가능) 예정이며, 또한 행복주택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상권 등기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 단지 동측은 시흥시에서 관리중인 상생파크몰(주차 건물)이, 단지 북측은 시흥세무서가 위치해 있고 그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으며, 단지내 어울림센터가 위치해 있어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빛이 반사되거나,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특히, 시흥세무서 방향은 세무서로부터 납세자 민감정보 등의 문서 보안 침해가 우려되므로 도찰 등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한 민원과 불이익이 없도록 행동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당해 단지 입주자의 학교 배정(사업승인시 관련기관 의견)은 초등학교는 정왕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인근 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통학구역 조정과 통학여건 변화, 사업지 인근 개발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단지에서 정왕초등학교와 근교 중학교까지 통학거리는 다소 멀고, 통학시 여러 차례 도로를 횡단하여야 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용 가능한 차량 출입구는 단지 남측 출입구(101동 남측) 1개소로, “차량출입시스템”이 설치·운영되며, 주출입구 교차로는 비신호로 운영됩니다(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주출입구 교차로는 험프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포장재질과 마감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울림센터(보건소, 근린생활시설 포함) 및 행복주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법(소요비용 부담 등)은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호협의 조정 예정입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주택 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으로 시공되며, 옥상에는 태양광발전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행복주택 지상 2층 옥외 공간과 어울림센터(보건소, 근린생활시설 포함) 건물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행자 도로가 일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지상1층과 지상2층은 위치별로 근린생활시설과 사회적기업, 편의시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주거 세대는 지상3층 부터 지상26층까지입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외관, 도로(차선도색, 노면표시, 보도 등 포함), 조경, 식재 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내·외의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입주자 개인 체감도가 다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상담창구 및 현장(현장내부는 출입금지)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계획,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행복주택 서측(서북측방향)은 어울림센터(어울림플랫폼, 보건소, 근린생활시설)와 30m 폭원의 간선도로(마유로)가 위치하고, 마유로 측에는 관련기관과 협의결과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이전 설치 예정이며, 위치와 규모 등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유로 건너편은 소하천(군자천)이 위치해 있어 벌레, 해충, 악취 등 환경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남측 왕복 2~3차로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1개 차로 폭은 3m 이내로 현장여건 상 협소하며, 차로 폭, 마감방법 및 차선도색, 노면표시 등은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횡단보도는 험프식으로 계획되어있으나,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포장재질과 마감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위치한 보건소의 이용(응급차량 사이렌, 경광등)에 따라 소음 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CCTV(방범용)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경계나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전력, 통신(행정전산망 포함),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은 여건과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지상에 노출되거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및 차선계획 등 교통시설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경계부분 일부와 지구남측 경계부분 일부는 시흥시 건축조례에 따라 사업부지 공간을 일부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이 편히 쉬어 가는 휴게공간인 “공개공지(보도블록 및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등)”가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울타리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현장여건 또는 상위계획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일부 구간에 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이 같이 건설되는 복합개발단지로 차량출입구는 전체 2개소가 있으나,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용 가능한 차량출입구는 단지 남측 출입구(101동 남측) 1개소 뿐이며, 단지 서측 30m 도로(마우로)에서 보건소 방향 차량출입구는 어울림센터 이용 차량의 전용 출입구로 행복주택 입주자 이용이 불가합니다.
- 보건소 1층 앰블런스 주차구획(3대)을 제외한 모든 주차구획은 지하(지하1층에서 지하3층까지)에 계획되어 있으며, 행복주택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 구조로 단지 배치상 동별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내 주차구획은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지하2층과 지하3층 주차장은 행복주택 입주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지하1층 주차장은 행복주택과 어울림센터 주차장이 있으나, 차량멈춤 스톱퍼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구획, 차단되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구조입니다.
 - * 주차 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주차 대수는 여건에 따라 법상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 내 급속충전기(지하1층) 및 완속충전기가 설치되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주차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 확장형주차장, 경차형주차장, 전기차충전소로 구분하여 설치기준에 따라 각각 설치될 예정입니다.
- 주차구획 일부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출입구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수거함), 주동진입 경사로 등이 세대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및 분리수거대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층 세대 청약·계약 체결 전에 문의하거나 팸플릿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팬룸과 팬룸 상부의 환기탑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뽕칠로 시공되며, 기계, 소방설비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 매연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 계획이나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로 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9조에 따라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단지출입구, 각 동 출입구, 생활자원보관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됩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행복주택 각 동 19층 및 23층 외벽에는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각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면적, 규격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단지 내 설치된 비상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단지 배치 특성과 수목 식재 등으로 일부 세대는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폭원과 포장 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로시설물(낮춤경계석, 볼라드, 점자블럭 등)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디자인 및 위치 등 확정 예정입니다.
- 건물 전·후면의 소방 공기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식재 계획이 없습니다.
- 행복주택의 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 조경계획은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동 전면 및 주변 조경수목 식재에 따른 저층 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또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 및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배수트렌치는 일부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과 중앙에는 현장여건과 향후 관할 소방서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차전용도로(비상차로)가 설치되며 원칙적으로 일반차량의 통행은 제한됩니다.
-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어울림센터 및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포함)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에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인접동 저층부)에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보건소 화장실과 102동 저층 단위세대는 인접되어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보건소 화장실 창호는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불투명처리 예정)
- 근린생활시설과 건물이 주변 도로 등과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단 또는 경사로가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공용세탁실, 작은도서관, 사회적기업 등)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만 설치됩니다.
- 아파트 각층 복도 난간 상부에는 외부창호가 설치됩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동통신 설비 중계장치는 지하1층 피트 내 설치되고, 지하 1,2,3층에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높이 및 지하1층 차로 주차공간 높이는 2.7m이며, 지하2-3층의 차로 높이는 2.3m, 주차공간 높이 2.1m 이상입니다.
- 세대 내 에어컨 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거실과 실외기실간 거리가 먼 44B 타입에 한하여 에어컨 매립배관 설치됩니다.
- 공용세탁실 내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코인형 세탁기(5대) 및 건조기(3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차압감지관이 설치됩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색채계획 및 마감자재는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할 수 없으며, 이의 인테리어시공 시 원상 복구 및 하자 등 발생하는 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련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에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일반가구, PL창호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할 예정이며, 세대별 규격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내에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포함)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상하부장 후면에는 벽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당해 행복주택은 소형평형으로 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의 폭, 높이 등의 크기가 세대내 계획된 공간크기와 다를 경우 설치나 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자 사전방문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및 단열재가 설치되어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낙하 및 전도의 우려가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층에 따라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비상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파손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이 설치되어 인접세대의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1A타입 세대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빌트인 생활용품이 적용되며, 이외 평형은 빌트인 생활용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가구 : 책상, 반침장
 - 가전 : 가스쿡탑(2구), 소형냉장고
- 발코니 창호의 개폐방향은 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비상대피 동선으로, 물건 적재가 불가능합니다.

■ 지구 내 학교 관련

- 초등학생의 경우 정왕초등학교, 중학생의 경우 정왕중학군에 배치 예정이며,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은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고, 사업추진 장기화 등 제반여건의 변화와 정책 추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학교군 내 배치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1) 토지이용 및 교통

성능항목	성능평가	비 고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성능항목	성능평가	비 고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제로에너지건축물	-	
외피 열교 방지	-	

3) 재료 및 자원

성능항목	성능평가	비 고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건축물 전과정평가 수행	-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	-	

4) 물순환 관리

성능항목	성능평가	비 고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	

5) 유지관리

성능항목	성능평가	비 고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녹색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	-	

6) 생태관리

성능항목	성능평가	비 고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톱 조성	-	
표토재활용 비율	-	

7) 실내환경

성능항목	성능평가	비 고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	바닥(층간바닥)	-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
창호(직접면)	-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업체	감리회사
시흥정왕 1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보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동부건설(주) (주)대전사 유수전기(주) 장원전기공사 (주)경성텔레콤 아함전자 삼성종합전기(주) 새천년종합건설(주) (주)대경기술단	-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자명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대평엔지니어링(주) 지디엔지니어링(주)

13. 장애인 및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청각장애인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청각장애인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청각장애인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시각장애인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기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시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추후 안내되는 계약 체결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송부**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별지5-1, 5-2** 참고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등
-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문의처	전화	· 전용상담 : 031-250-8483(임시 전화번호이며, 상담은 '26.1.26(월)까지 가능)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18:00)
	인터넷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당첨자확인 ARS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https://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1. 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